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12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9.

다. 회 부 일 :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9월)되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물론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분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같은 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금융관계법령’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 거. (생략) <u><신설></u> 너. (생략) 4. 5.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더. (현행 너목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별표] 금융 관계 법률(제2조제1호 관련)	
<u><신설></u>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정보 보호법」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의3. 「개인정보 보호법」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¹⁾를 의미함.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절차²⁾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일정한 기간³⁾ 동안 일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현행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⁴⁾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가 할 수 있으며⁵⁾,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금융관련법령⁶⁾의 규정 중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⁷⁾.

-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 3)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2년의 범위 내 지정, 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법 §4①, §10①)
○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최대1년 6개월(최초 6개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10의2⑦)
- 4)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전자금융업자,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말 기준 총 1,07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그중 476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음.

[표 1]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6월말	계
지정건수	77건	58건	50건	52건	56건	207건	498건	77건	1,075건
출시건수	63건	42건	45건	26건	27건	97건	157건	19건	476건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현행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대상(금융회사등) 및 규제 특례 법령(금융관련법령)에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관련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같은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규제 특례 대상 법률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

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지로 보임.

□ 현행법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의 제정 시기 및 가상자산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 법은 지난 2018년 신산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차원에서 산업·ICT·지역특구 등의 분야에서 시범인가와 규제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9년 4월 부터 시행되었음.

-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2020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 함) 개정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처음 부과되면서 관련 규제 체계⁸⁾가 신설되었음.

-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⁹⁾되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지 않음.

○ 한편, 가상자산에 대해 과거 정부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투

8)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2020년) 당시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금지 기준을 설정하고 회원국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미신고 영업시 처벌하도록 개정됨.

9) 2023.7.18. 제정 및 2024.7.19. 시행

기과열 및 불법행위 발생 등으로 인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과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¹⁰⁾을 발표하면서, 당시 시점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상자산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함.

- 중소벤처기업부도 2018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대상 업종에서 배제한 바 있음¹¹⁾.

○ 이와 같이 과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혁신성·사업성 측면보다는 투기과열 해소,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과 같은 규제 필요성이 보다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2020년 이후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임.

10)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 2017. 9.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의 유연한 지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규제 특례 법령에 개정안과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¹²⁾을 밝힌 바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도 2025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규제 체계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1단계 법률로서, 사업자 및 디지털자산 발행·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 위원회에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10개의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12)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2026. 6.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업 분야별 진입규제 도입,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규율¹³⁾하고 있어 특례 대상 규제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¹⁴⁾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법률을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법률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

1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 감독 및 처분,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